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36
------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1. 21.

제 출 자 : 이만재의원외 5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심사기간은 2005년 12월 5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사계획

1. 활동 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
-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3. 활동 기간

- 2006년 12월 5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유인환의원, 이만재의원, 함명섭의원, 김영해의원, 김진석의원
최귀녀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12.5(화)	제1차 조례특위 (10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. 평창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.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. 평창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.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.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	